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52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오세희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6. 4. 15.

다.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시형소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u><신설></u>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임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안 제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육성을 지원하고 제조업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1)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²⁾으로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함³⁾.

다만 현행 「국가계약법」이 일반경쟁입찰을 국가계약의 원칙으로 한 것은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계약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경쟁입찰의 예외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으로서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계약에 대해서는 도시형소공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3) 「소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소공인법 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예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등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임차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그 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건설공사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임차계약 및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및 용역계약 등

재정경제부는 현재 수의계약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및 타 수의계약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소상공인과의 수의계약은 이미 허용되어 있어 그 하위범주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법률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요건·사유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체계인 점, 현행 법체계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도시형소공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 개정안과 같이 수의계약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초과 물품계약 등에서 도시형소공인 외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도시형소공인 수의계약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문의처

02)6788-5160